

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있는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상호 또는 법인명	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	
	전자우편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	분야	종합업: [] 종합 전문업: [] 산림경영 [] 산림생태·공학 [] 산림휴양 [] 녹지조경		
	감면신청	[]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[]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	

※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.

등록 사항	기술인력	총 명 (특급: 명, 고급 이하: 명)		
	자본금 및 자산평가액(필요시)	자본금 원, 자산평가액 원		
	사무실 소재지			

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 및 수탁기관 확인사항	뒤쪽 참조	수수료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.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(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.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법인: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. 개인: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
수탁기관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명 3.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4. 장애인증명서(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